

의안번호	2214030
의 퇴 인	정태호의원
회 답 일	2025.12.3.
추계번호	25D6232

신산업·신기술 규제の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중앙규제특례위원회와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 2,200만원, 2031년 40억 8,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1억 4,300만원(연평균 40억 2,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4,022	3,975	4,011	4,048	4,087	20,143	4,029

주: 본 추계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규제샌드박스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됨.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제3항) 1.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 신산업·신기술 또는 규제특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2	안 제8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국무총리는 규제특례 관계 법률에 따른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통합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및 소관 개별위원회 지정 2. 규제특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규제특례 신청·승인 건에 대한 관리·감독 3. 규제특례와 관련한 법령정비 및 서비스·제품 상용화 등에 대한 관리·감독 4.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개별위원회로부터 조정을 요청받은 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검토·관리 5.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 결과에 대한 조정 신청 접수 6.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직접 특례 부여 안건의 발굴·접수 7.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신산업 규제특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2	안 제8조(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와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안 제8조 등)를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추가재정소요는 민간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5조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 민간위원 수는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10명,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위원회 회의횟수는 연 20회로 하고,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참고하여 30만원(안전검토 10만원, 회의 참석 20만원)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상근직원(10명)의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자산취득비, 센터의 운영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인건비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2025년 기준 상근직원 수와 보수액을 참고하여 추정함
 - 센터장(1명): 113,292천원(월 9,441천원×12개월×1명)
 - 연구원(9명): 692,280천원(월 6,410천원×12개월×9명)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는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규제혁신추진단 임대현황

구분	지역	임차면적	월 임차료 등(단위: 천원)		
			임차료	관리비	소계
규제혁신추진단	서울 종로구	1,927㎡	61,729	33,371	95,100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중 실증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법률자문 및 컨설팅은 「산업융합 촉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1)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중앙규제특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산업·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규제특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2. 신산업·신기술 또는 규제특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3] 규제 특례 부여 실증사업 지원내역

항목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책임보험료 지원	200	▶ 규제 특례 부여를 받은 실증사업에 대해 책임보험료 지원 - 단가 2,000만원 × 10건 = 20,000만원
실증 지원	300	▶ 규제 특례 부여를 받은 실증사업에 대해 실증 지원 - 단가 3,000만원 × 10건 = 30,000만원 * 최대 300백만원 이내에서 사업 따라 유연하게 지원
법률자문 및 컨설팅	200	▶ 규제 특례 부여 신청사업에 대한 규제 유예 방법 등 법률 자문 - 최대 200백만원 이내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그 밖의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정함

항 목	금액(백만원)	상 세 내 역
전문가 활용비	120	▶ 과제검토 사례비 : 20인 × 30만원 × 20회 = 12,000만원 * 이해관계자 갈등, 부처간 이견 과제 등 검토 → 조정필요과제 선정
위탁연구비	500	▶ 위탁연구용역(300백만원) -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활용 단가 5,000만원 × 6회 ▶ 위탁연구용역(200백만원) - top-down 과제, 다부처 규제 과제 등 과제 발굴·연구 단가 5,000만원 × 4회
교육비	15	▶ 규제샌드박스 부처 담당자 교육 + 기업 등 민간인 대상 교육 + 전문가 초빙 샌드박스 교육 등 단가 150만원 × 10회
실태조사	200	▶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조사 + 만족도 조사 등 단가 10,000만원 × 2회
출장비	40	▶ 국내출장 : 10인 × 10만원 × 20회 ▶ 국외출장 : 2인 × 2회 × 500만원* * 국외 규제샌드박스 운영 사례 등 조사
사무용품비	10	▶ 노트북 등 임차 : 임차료 100만원 × 3종 ▶ 사무용품비 등 : 700만원
수용비 (인쇄비 등)	80	▶ 인쇄비, 자료복사비, 매뉴얼 및 우수사례 발간 등: 8,000만원 *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 이슈보고서 등
홈페이지 구축·운영	100	▶ 홈페이지 구축(2027년) ▶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 관리(2028년 이후, 위탁용역 85,000천원)
합계	1,065	▶ 2027년: 10억 6,500만원 ▶ 2028년 이후: 매년 10억 5,000만원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³⁾를 각각 적용함

3)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앙규제특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

-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 수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민간위원: 총 15명 / 회의횟수: 연 20회 / 회의참석수당: 30만원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9,000만원씩 총 4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위원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중앙규제특례 위원회 (안 제5조)	민간위원	15	15	15	15	15	—	—
	회의횟수	20	20	20	20	20	—	—
	회의참석수당	0.30	0.30	0.30	0.30	0.30	—	—
	합계	90	90	90	90	90	450	

주 1. 회의횟수는 사법행정위원 후보자 수와 관계없이 2027년과 2031년 각각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2	3.3	3.3	3.3	3.3	3.3
기관부담 효율(%)	11,436	11,749	12,064	12,405	12,749	13,095
1인당 자산취득비(공공기관 천원)	6,992	7,129	7,271	7,417	7,565	7,7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등)

1) 인건비

□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센터장(1명)과 연구원(9명)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現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2025년 기준 상근직원 수와 보수액에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공기관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2025년 기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센터장과 연구원 보수액은 다음과 같음

[표 6]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센터장과 연구원 연 보수액: 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센터장	연구원
보수액	113,292	76,920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센터장	보수	121	125	129	133	138	646
	기관부담금	14	15	16	17	18	80
	소계	135	140	145	150	156	726
연구원	보수	859	887	916	947	978	4,587
	기관부담금	87	92	98	104	110	491
	소계	946	979	1,014	1,051	1,088	5,078
합계		960	994	1,030	1,067	1,106	5,157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운영비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임차비용(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규제특례 부여 실증사업 지원 비용, 그밖의 운영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다만, 추계기간 동안 그 비용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임차비용	보증금	66	-	-	-	-	66
	임차료	741	741	741	741	741	3,705
	관리비	400	400	400	400	400	2,000
	소계	1,207	1,141	1,141	1,141	1,141	5,771
실증사업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200	200	200	200	200	1,000
	실증 지원	300	300	300	300	300	1,500
	법률 컨설팅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	700	700	700	700	700	3,500
기타운영비용	전문가 활용 등	965	965	965	965	965	4,825
	홈페이지 구축운영	100	85	85	85	85	440
	소계	1,065	1,050	1,050	1,050	1,050	5,265
합계		2,972	2,891	2,891	2,891	2,891	14,536

자료: 국무조정실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9억 3,200만원, 2031년 39억 9,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96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8조 등)	인건비	960	994	1,030	1,067	1,106	5,157
	운영비	2,972	2,891	2,891	2,891	2,891	14,536
	합계	3,932	3,885	3,921	3,958	3,997	19,6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중앙규제특례위원회와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0억 2,200만원, 2031년 40억 8,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1억 4,300만원(연평균 40억 2,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중앙규제특례위원회 (안 제5조)	90	90	90	90	90	450	—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8조 등)	3,932	3,885	3,921	3,958	3,997	19,693	—
합계	4,022	3,975	4,011	4,048	4,087	20,143	4,029

주: 본 추계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규제샌드박스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규제샌드박스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